


이 보도자료는 2020. 7. 20.(월) 조간에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| |
|--|--|
| 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문공보관 유진승 전화 061-725-4310 / 팩스 061-725-4315 | 보도자료 2020. 7. 17.(금) |
| | 제 목 아동보호를 위한 직권 출생신고 및 친권상실 청구 |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(지청장 이철희)은 아동학대·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한 엄정대처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주력해 왔는바, 최근 아동학대가 문제된 두건의 사안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 출생신고 및 친권상실청구를 이행하였음
- 미혼모가 출생 직후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긴 채 2년 9개월간 출생신고를 거부한 아동학대사건 수사과정에서, 장기간(1년 3개월) 출생신고 이행기간 부여·권유 등에도 불구하고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, 2020. 7. 15.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 출생신고 조치함
- 알콜중독인 친부·친모가 5년여간 두자녀(현재 17세, 9세)를 폭행하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은채 방임한 아동학대사건 공판과정에서, 피해아동 측(국선변호사 등)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. 7. 10. 아동복지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친부·친모에 대해 친권상실청구함
- 우리청은 향후에도 아동학대·가정폭력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,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편입 등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음

1 생후 2년 9개월 아동에 대한 직권 출생신고

- 검찰은 아동학대사건 수사 과정에서, 피해아동이 장기간(생후 2년 9개월)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
 - 미혼모인 피해아동의 친모는 피해아동을 출산한 후 피해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
- 검찰은 피해아동의 출생미신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의 친모에게 장기간(1년 3개월) 수회에 걸쳐 출생신고를 권유하였으나, 피해아동의 친모는 결국 출생신고 불이행
- 이에 검찰은 피해아동의 불안정한 법적·사회적 신분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, 2020. 7. 15. 「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」 제46조 제4항(2016. 11. 법률 개정으로 검사의 직권 출생신고 조항 신설)에 의해 피해아동에 대한 직권 출생신고를 실시하여, 피해아동이 출생 후 약 2년 9개월 만에 온전한 법적 신분을 취득하도록 하였음

<출생신고 불이행시 피해아동의 피해>

- ▶ 출생신고 지연시 피해아동은 법적·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제반분야에서 큰 불이익을 겪을 수 밖에 없음
-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신분 확인을 할 수 없어 의료, 금융거래, 취업, 전산·통신 서비스 이용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움
 - 이 사건 피해아동의 경우,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진료시 사용하고 있으나, 의료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서면으로 보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
 - 이 사건 피해아동은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,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복지시설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임

-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누구나 수급대상자이나,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출생신고 지연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음

※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도 가구(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) 단위로 지급되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

② 알콜중독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

-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 공판과정에서, 피해아동의 부모가 수사이후 계속 알콜중독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,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
 - 피해아동의 부모는 수년 전부터 수회 알콜중독 치료를 받았으나, 생활고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어 자녀들을 유기·방치하였고,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임
- 피해아동 측은 2019. 11.경 국선변호사를 통해 현재 양육 중인 친척이 피해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찰에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함
- 검찰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, 아동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2020. 7. 10.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친권상실 청구를 하였음

③ 향후 계획

- 광주시검 순천지청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향후로도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 자세로 최선을 다할 예정임 卍